

自動車保險者の 免責事由에 대한 考察

任 忠 熙

(大法院 判例調査委員・法學博士)

◀ 目 次 ▶

- I. 序 論
- II. 自動車保險者の 免責事由의 뜻
- III. 商法上的 免責事由
- IV. 保險約款上的 免責事由
- V. 結 論

I. 序 論

현대경제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아니 될 生活必需品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는 우리 경제생활에 기동성과 편리함을 주고 있음은 물론, 특히 육상운송의 中樞로서 우리 경제성장에도 切實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現代文明의 利器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履行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人的・物的 損害를 초래하는 「야누스」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 더구나 고도의 經濟成長과 비례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도로교통이 확대되면서 그 兩面性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제 자동차가 「달리는 棺」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¹⁾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수요가 해마다 急增하면서 동시에 사고건수도 정비례하여 激增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²⁾ 1991년 한 해에만도 자동차사고가 257,345건이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人的・物

1) 吉川 吉衛, 事故と保險の構造, 1988, 150~151面 참조.

2) 교통사고발생상황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추 계)
事故件數(件)	175,661	225,062	255,787	255,303	257,345
死亡者數(名)	7,206	11,563	12,603	12,325	12,852
負傷者數(名)	222,701	287,739	325,896	324,229	323,000
(死傷者 計)	(229,907)	(299,302)	(338,499)	(336,554)	(335,852)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的 損害도 엄청나서 人的損害만도 335,852명에 이르고 있어, 세계제일의 交通事故 發生率이라는 불명예를 얻은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자동차사고는 어느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대처해야 하는 政治的·經濟的·社會的 課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방지대책으로서 運轉者 및 步行者의 교통도덕의 양양, 도로시설의 개량·정비,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 차량의 정비·점검의 강조, 안전띠의 착용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인구와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자동차사고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동차사고는 현대사회에서 일종의 「社會惡」 내지 「必要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자동차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加害者 또는 被害者가 될 수 있다.³⁾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사고당사자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만 다루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만큼 자동차사고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 피해로 인하여 하나의 社會的 危險이 되고 있고, 그 損害補償 또한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⁴⁾

일단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그 인적·물적 피해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더구나 피해자가 家長인 경우에는 그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그 피해의 영향이 미침으로써 더욱 큰 곤경에 처할 위험을 안겨준다. 따라서 法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填補하기 위하여 그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피해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過失責任은 물론이고, 無過失에 가까운 엄격한 損害賠償責任을 지우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加害者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더라도 加害者에게 그 책임을 배상할 資力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⁵⁾

원래 不法行爲制度가 損害의 公平·妥當한 分配를 꾀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자동차사고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다 보면 그 취지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기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被害者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 제도가 이른바 自動車責任保險이다.

保險制度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할 목적으로, 같은 사고를 당할 위험

3) 자동차사고는 통상의 不法行爲와는 달리 가해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다른 운전자의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이나 보행자·자전거 등의 갑작스런 돌출에 직면한 운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이, 加害者·被害者性이 모호한 사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金星泰, 自動車事故로 인한 人的損害補償制度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86), 14面.

4) 梁承圭, 自動車責任保險의 問題와 改善方向, 法學 제31권 1·2호, 21~22面 참조.

5) 1990. 11. 4. 소양호에 추락하여 21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42명이라는 대형 참사사고를 낸 자가용 관광버스의 경우는 그 좋은 예이다. 이 자동차는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強制保險)은 물론 自動車綜合保險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無保險車로서, 保險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동차소유자의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에만 의지하여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그 자동차소유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資力이 없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한국일보, 1990. 11. 6.字, 24面 참조)

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危險團體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保險料)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保險基金)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保險金)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⁶⁾

따라서 보험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생겨나는 각종의 危險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⁷⁾ 중의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날 자동차보험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도 자동차사고라는 우발적 사고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고 많은 保險契約者 사이에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 인하여⁸⁾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經濟保險策으로서 가장 유용한 제도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이러한 效用性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對人賠償의 불합리와 보험운용 등에 있어서 정착된 이론이 없다는데 있다. 특히 無限賠償責任保險商品의 개발로 인하여 보험금의 高額化現狀이 두드러질뿐 아니라, 自動車保險 普通約款에서 정하고 있는 保險者의 免責事由도 최근의 判例 등에서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끝내는 保險經營의 危機⁹⁾마저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II. 自動車保險者의 免責事由의 뜻

自動車保險者의 損害賠償責任은 被保險者가 자동차의 運行으로 他人의 생명 또는 신체를 死傷함으로써 생기는 人的·物的인 對人·對物의 損害事故(Schadensereignis)¹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보험자가 언제나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즉, 保險契約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射倖契約으로서, 給付와 反對給付의 균형을 유지하고 도덕적 위험의 배제 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자의 補償責任을 면제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保險者의 免責事由이다.

이것은 保險制度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연한 사고로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분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¹¹⁾라는 점에서 일응 그 취지에 반한다고 하겠으나 保險契約者 등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다는 점¹²⁾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保險金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일정한 경우 保險契約法이나 保險

6) 徐墩珪, 第三全訂 商法講義(下), 321面; 鄭熙喆, 商法學(下), 341面; 梁承圭, 保險法, 19面; 崔基元, 商法學新論(下), 442面.

7)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d., 1957, p. 3.

8) Robert E. Keeton & Alan I. Widiss, Insurance Law Practitioner's Ed., 1988, p. 3.

9) 1991 회계연도의 경우 8월까지의 평균손해율이 92.3%에 이르러 保險經營의 收支가 악화되어, 1991. 8.까지의 누적된 적자규모가 9,64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保險新報, 1991. 10. 28. 字, 7面 참조).

10) 오스트리아의 AKHB § 2 참조.

11) Robert E. Keeton & Alan I. Widiss, op. cit., p. 3.

12) 梁承圭, 前掲書, 122面.

約款은 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정해 놓고 있다.¹³⁾

우리 商法은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故意·重過失에 의한 保險事故의 발생을 보험자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고, 제660조에서는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免責事由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自動車保險 普通約款에서도 각종의 免責事由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¹⁴⁾

특히 保險約款에서 정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責任免除事由(exceptions)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保險危險除外事由(exclusions)가 그것이다.¹⁵⁾ 보험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普通保險約款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가 責任免除事由와 保險危險除外事由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령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故意나 중대한 過失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 보험자가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사고의 원인이 인위적¹⁶⁾이라는 점에서 前者에 속하고, 傷害保險約款에서 「피보험자의 뇌졸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약관 3조 1항5호)로 생긴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신체의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 傷害事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

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III. 商法上の 免責事由

개정 상법 제726조의 2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保險者가 被保險者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입은 자동차 사고의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商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1. 保險契約者 등의 故意·重過失에 의한 保險事故의 발생

商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가 인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경우에는 保險事故로서의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요구되는 信義誠實의 원칙과 공서양속에 반하여 공익을 해할 뿐더러¹⁸⁾ 보험계약자 등이 인위적

13) 독일 VVG § 61, § 152; 프랑스 Code des Assurances, L. 113-1; 日本商法 제641조 참조.

14) 그러나 이는 보험가입자측의 의무위반에 따라 保險者가 解止權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는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분류하지 않는 학자도 있다(徐燾珏, 前掲書, 364面).

15) Robert E. Keeton & Alan I. Widiss, op. cit., pp. 287, 547.

16) 예컨대 피보험자의 자살, 자해행위,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 등을 들 수 있다.

17) 梁承圭, 業務上 災害事故를 免責事由로 한 自動車保險約款의 效力; 法學 제31권 3·4호, 265面.

18) 徐燾珏, 前掲書, 364面.

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은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주관적인 위험을 배제하고, 保險詐欺를 방지하여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고자 함에 있다¹⁹⁾고 할 것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保險契約者 등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인위적으로 保險事故를 일으킨 것은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주관적인 위험을 배제하고²⁰⁾ 危險詐欺(Versicherungsbetrug)를 방지하여²¹⁾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고자 보험계약자 등이 輕過失의 경우만 아니면 故意·중대한 過失로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²²⁾ 그러나 商法 제659조 제2항과 같은 人保險의 경우에는 故意事故의 경우에 한해서 保險金 영득의도와는 관계없이 保險者의 免責을 규정하고 있으나 立法論으로는 人保險에서도 損害保險과 같이 重過失免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保險契約者 등의 故意라 함은 반드시 보험금 취득의 의사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데 대한 故意면 족

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故意는 원인행위에 대하여 있으면 되고, 그 고의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도 상관없으므로 未必的 故意만 있으면 된다.²³⁾ 그리고 중대한 過失이란 현저하게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예컨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단운전을 방조한 경우, 비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 등의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保險者의 免責事由로서의 중대한 過失은 보험제도의 본질상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로 한정되고, 보험계약자 등의 輕過失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들의 注意義務를 완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民法上 過失責任理論과는 다르다고 하겠다.²⁴⁾

한편 자동차사고와 같은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때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것을 保險者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주변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보험자의 故意가 있다는 推定的 證據(Beweis auf erste Sicht)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²⁵⁾

19) 梁承圭, 前掲書, 123面.

20)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3Aul., 1984, §. 363; Edgar Hofmann, Privatversicherungsrecht, 2Aul., 1983, §. 156.

21) Albert Ehrenzweig, Deutsches (Österreichisches) Versicherungsvertragsrecht, 1952, §. 270.

22) 梁承圭, 前掲書, 124面.

23) E. Hofmann, a. a. O., §. 157.

24) 梁承圭, 前掲書, 124面.

25) E. Hofmann, a. a. O., §. 158; 大判 1984. 1. 17, 83다카 1940.

2. 전쟁위험 등으로 생긴 保險事故

保險事故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特約이 없는 한 보험자는 保險金額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여기서 戰爭이라 함은 선전포고가 있었느냐는 묻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전투훈련 중에 사망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한다.²⁶⁾ 그리고 變亂이라 함은 내란, 폭동 또는 소요와 같이 민중이 조직적 무력을 사용하여 국권에 항쟁하는 상태로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결국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될 개념이다. 이러한 것을 제외한 이유는 保險料 算定の 기초가 되는 것은 평시 또는 보통 상태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이것으로 인한 손해의 정도에 관한 개연율인데, 전쟁 기타 변란에 의한 사고는 평시에는 예상할 수 없고 규모가 막대하므로 합리적인 保險料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²⁷⁾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 계약자에게도 불이익하기 때문이다.

IV. 保險約款上的 免責事由

1. 損害의 발생원인에 의한 免責

(1) 故意로 인한 손해

自動車保險約款에서는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또

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被用者의 故意로 인한 손해를 免責事由로 하고 있다.²⁸⁾ 이것은 인위적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험계약자 등의 故意로 인한 손해만이 免責事由인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商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故意뿐만 아니라 중대한 過失로 인한 손해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상해보험의 경우에는(상법 제659조 제2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過失로 인한 保險事故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첫째, 중대한 過失은 우연성이 결여된 故意와는 다르며 둘째, 중대한 過失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여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세째,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네째, 실무상 重過失과 輕過失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다섯째, 보험일체의 기능면에서도 면책함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각 종목에서는 면책사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²⁹⁾

그러나 被保險者인 가해자의 행위자 故意로 인한 것이나 아니면 중대한 過失로 인한 것이나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영국은 故意 免責原則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공서양속적 요청이 있는 경우 그

26) 梁承圭, 前掲書, 127面.

27) 大森 忠夫, 保險法, 148面.

28) 자배책보험약관 제3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29) 西島 梅治, 保險法, 324面.

한도에서 故意免責原則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였는바³⁰⁾ Road Traffic Act (1972) 제148조에서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보험자는 加害者(被保險者)의 행위가 설령 故意로 인한 것이어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지급한 보험금을 피보험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³¹⁾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故意에 의한 사고까지 보험자의 補償責任을 인정한다면 책임보험의 社會保險的 성격상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자칫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故意免責原則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2) 전쟁, 천재지변, 기타 異常危險으로 인한 損害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제1항 2-4호에서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商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쟁, 변란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인 경우에 있어서 특약이 없는 한 면책사유로 하고 있음과 같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는 被保險者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가령, 피보험자의 책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대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保險料는 이러한 위험을 보험자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시키고 있는 것이다.³²⁾

(3) 제3자와의 契約에 의해 가중된 損害

被保險者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동항 5호). 이는 부분적 免責事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부분을 제외한 통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損害賠償責任의 발생요건에 관한 것³³⁾의 두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商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은 被保險者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

30) Hardy v. Motor Insurers' Bureau(1964). 이 Case에서 법원은 어떤 수사관이 절도범이 운전하는 차량을 저지시키려 하다 가 그 절도범이 고의적으로 모는 차에 치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수사관은 보험회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J. Birds, Modern Insurance Law, 1982, pp. 206~207.

31) J. Birds, op. cit., pp. 329~332.

32) 佐藤 勇夫·黑順 伸雄, 保險者 免責(新損害保險雙書 2.) 259面.

33) 예컨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法定要件보다 완화하거나 立證責任 등을 被保險者에게 불리하도록 전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責任保險契約에서 被保險者는 특히 保險事故의 발생후에, 피보험자와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한 協助義務를 지게 된다.³⁴⁾ 만약 피보험자가 그러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동의없이 손해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保險會社의 지급기준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그것이 지급기준을 크게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승인, 화해, 또는 소송상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³⁵⁾

(4) 無免許·飲酒運転

1) 意義

자동차사고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自動車保險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를 담보하는 傷害保險을 들 수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은 對人, 對物賠償 부분에서 被保險自動車の 운전자가 無免許運転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제6호), 그 용어풀이에서 「無免許運転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國際免許證(도로교통법 제80조)이 아닌 한 국내에서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였다

면, 그것은 당연히 無免許運転으로서 免責約款에 정한 無免許運転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무면허운전은 道路交通法上の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운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정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그리고 自損事故 부분에서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제21조 제1항 제3호), 용어풀이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車輛損害 부분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보험자의 免責事由로 규정하고(제27조 제15호), 傷害保險普通約款에서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중에 생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데 무면허운전중의 사고가 손해와 因果關係가 있느냐 또는 傷害保險의 경우 피

34) Rowland H. Long, The Law of Liability Insurance, V. 2, 1988, pp.14-18.

35) 물론 約款의 지급기준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保險團體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보험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商法 제 659조 제2항,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선언한 제663조에 비추어 위 면책약관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피보험자가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비록 그 犯法行爲에 대하여는 自害行爲가 인정되지 않는 한, 故意가 없는 것으로 보아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大法院判例³⁶⁾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被保險者의 未必의 故意로 생긴 故意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⁷⁾

다시 말하면 被保險者가 무면허운전중에 생긴 사고로 傷害를 입은 것은, 바로 피보험자의 故意로 생긴 保險事故로 보는 것이 보험제도의 기본이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³⁸⁾

다음에서는 大法院 判例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判例의 檢討

[판례 1] 無免許運轉과 傷害保險者의 免責

(대법원 1990/5. 25. 선고, 89다카 17591 판결³⁹⁾)

〈判決要旨〉

無免許運轉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保險事故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保險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無免許運轉이 故意的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無免許運轉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被保險者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은 保險事故가 전체적으로 보아 故意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過失(重過失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商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過失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고, 이는 그 保險約款이 財務部長官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事實概要〉

피보험자 A가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60도 정도의 커브길에서 과속 및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왼쪽에 설치된 시멘트벽돌로 만들어진 하수구를 자동차 앞쪽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이에 보험수익자 원고 Y는 보험회사 피고 X에게 A의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X는 그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것으로 보험금지급책임

36) 大判 1990. 5. 25, 89다카 18591(법원공보 1990년 1364면).

37) 요컨대, 보험자의 免責事由로서의 被保險者의 故意는 그 원인행위가 선택한 사회질서나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 사고자체에 故意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떠나 적어도 被保險者의 未必의 故意를 인정하여 保險保護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道德的 危險(moral risk)을 방지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38) 梁承圭, 無免許運轉事故와 保險者의 責任, 法律新聞 1958호, 14면.

39) 법원공보 1990년 1364면.

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Y가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민사지법 1988. 12. 22. 선고, 88가합34573 판결)은 피보험자 A의 사망은 고의의 위법행위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보험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이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 Y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서울고법 1989. 6. 2. 선고, 89나7544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한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저촉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 X가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評 釋〉

이 사건 大法院 判決은 無免許運轉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故意的인 犯罪行爲이긴 하나, 그 故意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無免許運轉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死亡이나 傷害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無免許運轉을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 傷害保險約款의 조항은, 過失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法院이 無免許運轉으로 사고를 일으켜 傷害 또는 死亡한 被保險者를 동정하여, 保險者에게 그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고의적인 범죄행위의 결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傷害事故에 대한 故意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보험약관의 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2항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⁴⁰⁾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독일의 傷害保險約款에서는 「피보험자의 重罪 또는 輕罪(Verbrechen oder Vergehen)의 고의적인 실행이나 미수의 결과로 생긴 傷害」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⁴¹⁾

또한 영·미에서도 法律違反(Violation of Law)을 保險者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데, 교통법규위반은 면책사유인 法律違反으로 인정하고 있다.⁴²⁾ 따라서 우리 傷害保險約款의 면책사유인 「被保險者의 無免許運轉」은 傷害事故에 대한 피보험자의 故意가 있었느냐의 여부로 商法 제659조 제2항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道路交通法의 정신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판례 2] 無免許運轉과 保險者의 責任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⁴³⁾

〈判決要旨〉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免責事由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無免許運轉과 事故 사이에 因果關係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約款條項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극히 증대하는 것이어

40) 梁承圭, 傷害保險의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效力, 法律新聞, 1946호, 15면.

41) 獨逸傷害保險約款 제3조, 제2조 참조.

42) McGillivray & Parkington, Insurance Law, 1981, p. 763.

43) 법원공보 1990년 1541면.

서, 그러한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因果關係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因果關係의 존부에 관계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道路交通法과 重機管理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하고 있고, 또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免責條項이 無免許運轉과 保險事故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事實概要〉

원고 Y는 피고 X와의 사이에 그 소유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Y의 피용자인 A가 돌산작업장에서 면허없이 굴삭기 운전작업 중 25m 높이에서 80t 가량의 바위덩어리가 굴삭기 위로 갑자기 떨어지면서 굴삭기가 수리불가능한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에 원고 Y는 보험자인 피고 X에게 굴삭기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X는 사고 당시 굴삭기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7조 제15호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Y가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민사지법 1989. 4. 20. 선고, 88가합 49001 판결)과 제2심(서울고법 1989. 11. 17. 선고, 89나19301 판결)은 운전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자는 무면허운전과 사고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조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굴삭기의 파손은 바위덩어리가 떨어진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보험자인 피고 X가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破棄還送하였다.

〈評 釋〉

이 大法院 判決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27조 제15호에 정하고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자의 免責條項이 무면허운전과 사고사이에 因果關係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풀이하고, 무면허운전은 일종의 범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중에 생긴 차량손해가, 무면허운전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조장 내지는 幫助로도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判決에서는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 無免許運轉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保險者의 免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無免許·飲酒運轉 중에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음주운전이 사고발생의 원인이었다고 일응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자가 면책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과 사고사이에 因果關係 여부를 묻지않고 면책된다고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실질적으로 원인에 관한 것인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이 判決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⁴⁴⁾

그러나 이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고와 因果關係를 따지지 아니하고 보험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判決의 입장을 옳다고 생각한다.⁴⁵⁾

[판례 3] 無斷·無免許運轉과 保險者の 免責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 28287 판결)⁴⁶⁾

〈判決要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賠償責任條項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免責事由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法規違反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免責條項을 무효라거나 또는 그 효력을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事實概要〉

記名被保險者인 법인의 대표이사 Y의 아들 A가 무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Y는 보험회사 X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심(서울고법 1989. 9. 29. 선

고, 89나20417 판결)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적용하여 무면허운전의 주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한 후, Y의 아들 A가 자동차시동열쇠를 몰래 꺼내 무단운전한 자 이기는 하지만 Y의 회사에 고용된 운전자가 아니므로 X는 보험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X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評 釋〉

이 大法院 判例는 무면허운전자의 免責約款에 있어서 그 무면허운전의 주체를 被保險者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고발생시의 상황에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모두 이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判決은 현재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上的의 책임범위를 점차 확대 해석해 나가는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自賠法上 “自己를 위하여 자동차를 運行하는 자” 속에서는 自動車保有者(被保險者)의 運行支配를 벗어난 無斷運轉者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절취하는 등 무단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保有者에 책임이 없으므로 保險者에 책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 自動車損害賠償責任을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피해자의 보호에 만

44) 金鍾大, 保險者の 無免許·飲酒運轉免責에 관한 普通保險約款의 效力, 司法論集 제22집, 350面.

45) 梁承圭, 前掲 法律新聞 제1958호 14面.

46) 법원공보 1990년 1571面.

전을 기하자는 다분히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自動車 運行支配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석해 나간 나머지 무단운전중 보유자의 잘못으로 유발된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보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특수한 범위의 무단운전의 경우 그 무단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그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⁴⁷⁾ 그 후 保險者가 이를 전보해 줄 것인지 아니면 보험자는 免責約款에 의해 그 책임에서 벗어날 것인지가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관리를 소홀히 한 過失 때문에 무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까지 그 책임을 추궁당하는 데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道德的 危險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판례 4] 無斷·無免許·飲酒運轉者와 保險者의 責任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⁴⁸⁾

〈判決要旨〉

가. 商法 제659조 제1항은 保險事故를 직접 유발한 자 즉, 損害發生原因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保險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保險約款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免責事由를 규정하는 것은 商法 제663조의 不利益變更禁止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損害發生時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免責事由로 규정하는 것은 위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위 保險契約中 無免

許運轉免責條項은 事故發生의 원인이 無免許運轉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無免許運轉中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증시하여 이를 保險者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無免許 免責條項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묻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무면허운전의 경우를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支配管理下에 있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부당하다.

〈事實概要〉

피보험자인 원고 Y가 보험회사인 피고 X와의 사이에 그 소유봉고트럭에 관하여 대인배상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Y가 경영하는 회사 앞길에 피보험차량을 열쇠를 꽂아둔 채 정차시켜 놓은 사이에, 전에 위 회사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가 무단으로 무면허인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도우측단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는 B를 위 봉고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B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피보험자인 원고 Y는 보험회사인 피고 X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X는 사고당시 봉고트럭의 운전자가 무단·

47) 任忠熙,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法理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1990), 54~55면.

48) 이 全員合議體判決에 의하여 大法院 1990. 6. 26. 선고, 89다카28287 判決은 변경됨.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Y가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법 1990. 6. 29. 선고, 90나15947판결은 위 무면허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과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보험자 X가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評 釋〉

이 大法院 判決은 保險者의 免責事由를 배척하는 이유로 「자동차교통의 발달로 자동차의 사용이 생활의 필요수단으로 일반화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예컨대,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관리상의 잘못이 있는한 賠償責任을 지게하는 등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이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받을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無免許運轉 免責條項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무면허운전의 경우를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하에 있지않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被保險者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제도의 기능과 효용은 크게 감쇄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호도 소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6조 제1, 2항과 제7조 제2, 3항에 의한 約款의 內容統制原理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결국 위 無免許運轉 免責條項의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이 수정된 범위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明示的 또는 默示的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大法院 判決의 判示와는 달리 無斷·飲酒·無免許運轉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것은 보험의 順機能的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오늘날 자동차의 무면허운전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주어, 법률상으로는 실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故意 또는 故意에 준하는 행위로 취급하여 보험자에게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保險制度가 危險團體를 전제로 하여,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는 구조를 지닌 것이고, 보험이 없으면 각종의 우연한 사고

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이 무조건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는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에서 소비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는 善意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를 보호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이 스스로 違法行爲를 한 경우까지 보험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信義誠實의 원칙에서나 형평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犯法行爲에 대하여는 보험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임의책임보험과는 달리 강제책임보험인 自賠責保險에서는 被保險者の 故意로 생긴 사고까지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이다.

위와 같은 범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道德的 危險(Moral Risk)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사고의 억제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大法院 判決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非事業用自動車の 營利行爲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댓가를 받

고 자동차를 사용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7호). 이는 自動車運輸事業法에서도 非事業用自動車인 自家用自動車の 營利行爲를 금지(동법 제58조 제59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 자체가 운행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犯法行爲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보험제도로써 보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동차사고의 억제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다.

綜合保險約款上 「영리목적의 대여행위나 요금 또는 댓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다 함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요금 또는 댓가를 받고 사용한 때」라 함은 통상 차량유지를 위한 실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고 자동차를 사용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료대, 고속도로통행료 또는 음료대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요금 또는 댓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有償貸貸의 경우에 있어서 1개월 이상의 장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賃借人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시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과는 달리 위험도가 크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일반기업 등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을 고려하여 免責事項에서 제외하고 있다(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 무단·절취운전자의 영업행위와 被保險者の 개별적용문제는 전술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면책약관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被保險者와 被害者의 인척관계에 의한 免責

(1) 記名被保險者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특히 이 경우에는 이들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被保險者(許諾被保險者)가 被保險自動車를 사용하다가 記名被保險者를 死亡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험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記名被保險者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며, 이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直接加害者로서 그 가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自賠法에서도 타인에 속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종합보험에서도 언제나 면책이다. 이를테면, 정비불량인 자동차를 모르고 빌린 被保險自動車를 운전중에 정비불량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記名被保險者인 소유자가 운전자의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운전자 자신이기 때문에 이 조항(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운전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가족간의 처리문제로 사회통념상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⁴⁹⁾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3) 賠償義務者가 있는 被保險者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 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이다. 여기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라 함은 記名被保險者나 운전자 이외에도, 약관 제11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한 친족이나 許諾被保險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피보험자의 위치에 있을 경우,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므로 記名被保險者나 운전자의 경우와 같이 이들은 물론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가족관계를 정한 것이다.

(4) 피용자의 業務上の 災害免責

근로자가 업무상의 災害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다(商法 제78조 이하).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이 사회보험으로서 영위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

49) 佐藤 勇夫・黒順 伸雄, 前掲論文, 260, 266面.

는 사람⁵⁰⁾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피용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人的損害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때에는, 勤勞基準法과 産災保險法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상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産災事故를 免責事由로 한 이 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自動車綜合保險에서는 對人無限賠償責任을 담보하고 있고, 産災保險에서는 보상기준에 따른 일정한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면책조항이 商法 제659조의 면책사유보다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大法院은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被保險者의 고용인으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産災保險에 의하여 전보반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轉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그 면책조항이 商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다⁵¹⁾

이에 대하여 約款審査委員會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동 면책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라고 심결하였다⁵²⁾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조항의 제4호와 제5호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우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배상하지 아니할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사고와 피해자의 업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피해자가 우연히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며, 그런 우연한 사유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할 사유로 삼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민사상의 不法行爲責任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피해자가 다른 보상을 받는다면 그 범위내에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대법원 판결은⁵³⁾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對人賠償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被保險者의 피용자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免責條項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에 의하여 전보반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

50)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51) 大判 1989. 11. 24, 88다카29177(법원공보 1990년 29면).

52) 1987. 7. 1.부터 이른바 約款規制法이 시행되면서 각종 소비자단체에서 업무상 재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約款審査委員會에서는 1990. 2. 19.에 이 免責條項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大法院 判決과 배치되어 논란이 있다.

53) 大判 1990. 4. 24, 89다카24070(법원공보 1990년 1141면).

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면책조항이 商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約款規制法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大法院判決은 그동안 면책조항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분쟁에 대하여 유권적인 해석을 내린 判決로서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이 판결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근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勤勞基準法에서 사용자의 각종 補償責任을 담보하기 위한 産災保險制度가 있으므로, 앞에서 든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免責條項은 그러한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自動車保險의 대인배상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의미를 밝히고, 商法 제659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自動車保險과 産災保險이 二重保險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大法院 判決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2항 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被保險者의 피용자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勤勞基準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轉補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지라도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면책조항의 예외를 정당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大法院 判決도 앞에서 본 종전의 判例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自動車保險者의 保險責任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勤勞者災害保險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적극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은 사망 또는 상해는 使用者賠償責任(Employers' liability)에 속하는 것이지⁵⁴⁾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保險制度의 성격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그가 인수한 위험으로 인한 사고의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하지 아니한 위험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보험제도의 법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54) Rowland H. Long, op. cit., pp.10-44.

V. 結 論

現代經濟生活에서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우기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자동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머지않아 모든 가정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될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自動車文化를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도로여건이나 교통질서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부작용이 크다는 데 있다. 이것은 결국 自動車事故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또한 격증하고 있어, 自動車事故의 위험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人的·物的 損害도 엄청나서, 그 損害處理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損害危險을 피해자측이 감수해야 한다든가, 가해자측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⁵⁵⁾은 별로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이는 비록 不法行爲制度가 공평·타당한 분배의 이념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에게 그 損害를賠償할 자격이 없으면 결국 피해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같이 보호할 수 있는 保險制度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단체를 기준으로 保險의 분산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특히 自動車

事故로 인한 社會的 危險이 일상적이고, 국민대다수가 그러한 행위로 불의의 損害를 입는다면, 그로 인한 損害는 결국 사회전체적인 연대의식하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가 自動車責任保險이다. 오늘날 국민 누구나 자동차보험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지다 보니 이제는 정부에서도 자동차보험 등을 전담할 부서를 재무부 보험국내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自動車事故가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또한 빈번한 사고로 말미암아 그 損害로 인한 補償이 엄청나다. 더우기 人的損害의 보상에 있어서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保險者가 지급하는 保險金 역시 고액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無限補償保險을 마치 「백지수표」와 같이 잘못 인식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더많은 보상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保險約款의 지급액과 法院判決額간의 현격한 차이로 訴訟提起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자의 보상액은 더욱 늘어나 결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保險料의 인상으로 직결되어 결국 피보험자는 보험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는 더욱 어려워진다. 요즈음 判例에서는 自動車保險者의 免責事由를 규정한 自動車保險約款의 면책조항을 이른바 約款規制法에 의거하여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보면 보험회사의 경우에도⁵⁶⁾ 보험료의 인상에만

55) H. L. A. Cockerell & G. M. Dickinson, Motor Insurance and the Consumer, 1980, pp. 101~103.

56) 정부에서도 자동차보험의 경영합리화 및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自動車保險改善方案을 마련함은 물론 財務部 保險局내에 자동차보험 등을 전담·관장하는 特殊保險課를 신설하였다(保險新報 제211호 3면 참조).

의지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관리 및 손해율의 통제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⁵⁷⁾ 특히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중의 하나인 과잉진료, 과다청구, 편승진료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처리함은 물론 교통사고환자의 의료수가도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의료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수리비의 적정화를 위해서도 정부,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보험회사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人的損害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無限補償을 폐지하되 그 최고한도액을 설정하여 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공제제도(자기 부담제)를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 억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商法 제659조와 제663조 그리고 이른바 約款規制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自動車

保險約款의 免責條項이 무효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으나 결국 약관조항의 효력문제는 보험계약의 善意契約性 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무단·질취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비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 등과 같이 보험제도의 성질상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損害事故는 故意에 준하는 중대한 過失로 인정하여 보험자의 免責을 인정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실체에 있어서도 그것이 故意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重過失, 輕過失에 의한 것이냐를 保險者가 일일이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도덕적 위험으로 간주될 損害事故에 대하여는 故意·重過失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용 타당할 것이다. 비록 오늘날 경제적 약자인 消費者(被保險者)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추세⁵⁸⁾이나, 保險法理上 이것은 또다른 다수의 保險契約者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일이 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57) 全錫潑, 保險產業의 發展方向, 保險新報 제215호, 3面.

58) 無免許運轉 등의 사고로 인한 綜合保險約款上 免責條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自動車免許가 정지 또는 취소중인 保險契約者에게는 自家運轉綜合保險의 경우에도 免許者保險의 경우와 같이 保險契約이 失効되어 被保險者를 보호하는 제도상의 보완점이 있을 수 있겠다.